

발 신 :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

문서번호 : 미래에셋생명2012-1949

2012.07.31.

수 신 : GS자산운용(주)

참 조 :

제 목 : 미래에셋생명 판매펀드 선취판매수수료 인하 시행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당사 판매중인 집합투자기구(펀드)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대상 집합투자기구

- GS골드스코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종류A-e

나. 주요내용

- 선취판매수수료 인하 적용 판매
- 변경 전 : 납입금액의 0.70% 이하 → 변경 후 : 0% 적용

다. 관련 근거

- 자본시장법 제76조 (집합투자증권판매 등에 관한 특례) 및
-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7조 6항의 의거함

라. 적용일 : 2012년 8월 1일 부. 끝.

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
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 현 만

